

대전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단1113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1. 피고와 소외 망 C(D생, 대전 중구 E아파트, F호)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9,742,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42,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우근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0.71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광역시 서구 대 20393.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20393.25분의 21.376

이상 소유.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소의 땅 C (이하 “소의 땅인”이라 함)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권자입니다.

2. 원고의 소의 땅인에 대한 채권

가. 대출거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의 땅인과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래

대출종류	대출금(한도액)	대출일	대출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가계일반 자금대출	금 12,000,000원	2018. 9. 20.	2025. 9. 20.	변동금리	연 15%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2항내지 5항에 근거, 변동이율 적용금리. 단, 지연배상금율은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내에서 금융기관 연지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입니다.)

소의 땅인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 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소의 망인은 원고에게, 2021. 9. 28. 이후 편입 전 연체이자 537,715원 및 대출원금잔액 8,735,494원에 대한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현재까지도 지체하고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아래 표시 금원의 채무가 있습니다(특수채권원장조회표 기준).

아 래

합 계 (대출원리금)	대출원금(잔액)	대출총이자
금 9,742,666원	금 8,735,494원	금 1,007,172원

3. 사해행위

가. 소의 망인은 피고와 2021. 2. 24.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전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6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의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으로 소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 피고 역시 소의 망인의 친언니로서 소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어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 소의 망인은 지속적인 영업악화로 가까운 장래에 이자 상황이 어려워지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역시 소의 망인의 친언니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이자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가액배상)

가. 위와 같이 원고는 소의 망인에게 대여금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와 소의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2. 24. 중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동 선의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선의의 제3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가액배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대여금 금 9,742,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어

그러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